

●태안해양경찰서고시 제2025-25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및 태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4-03(안흥외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에 따라 지정된 안흥외항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1일

태안해양경찰서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공고대상: 정0진(78년생, 서울특별시 소재)

2. 근거법령 및 처분원인

가. 근거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나. 처분원인: 2025. 5. 30.(수) 09:56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안흥외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진입

다. 부과내용: 과태료 200,000원

3. 공고기간: 2025. 9. 11. ~ 11. 10. (60일간)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서 해양안전과(☎041-950-2548)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라. 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집행이 결정됩니다.

마.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41-950-2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